|  |  |  |
| --- | --- | --- |
|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 심사비준 관리방법**  (2000년 1월 28일 교통부 및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동으로 공표했으며; 2015년 7월 5일 교통운수부·상무부의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 심사비준 관리 잠정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의해 개정되었음.)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 해운회사의 투자·경영 행위를 규율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법과 관련 해운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 해운회사가 중국내에 독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전 항에서 외국 해운회사라 함은, 외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 설립된 해운기업(이하 '외국 해운업체'로 약칭)을 지칭한다.  **제3조** 외국 해운업체가 중국 내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선박관리회사 설립 심사비준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이하 '상무부'로 약칭)와 교통운수부가 책임진다.  **제4조** 외국 해운업체가 중국 내에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중국 정부와 외국 해운업체 소재국 정부가 체결한 해운협정 및 관련 법률문서에 의거하여 심사비준해야 한다.  **제5조**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15년 이상 해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신청인은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중국 대외개방 개항도시에서 안정적인 화물 및 승객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3) 중국 내에서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연속 2년간 중국 법률과 행정법규·규장을 위반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6조**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의 설립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  (3) 회사정관;  (4) 신청인의 법률증명서류와 자금신용증명서류;  (5)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의 법정대표인 위임장 및 이사회 구성원 명단과 이력서;  (6) 신청인의 선하증권 및 탑승권 견본;  (7) 상무부와 교통운수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8조**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신청인은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 설립 예정지의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서류심사를 거쳐 교통운수부의 동의를 득한 후 설립을 비준하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또는 <타이완·홍콩·마카오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2)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 설립 비준을 받은 신청인은 규정된 기한내에 회사등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를 신청하고 영업집조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관리직권을 보유한 교통운수주관부서로부터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 경영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영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8조** 비준을 거쳐 설립된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 또는 그 지사는 그 모회사가 보유중이거나 운영중인 선박을 위하여 다음 업무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급할 수 있다: 화물 유치, 승객 유치, 선하증권 대리발행, 탑승권 대리발행, 운송료 대리정산 및 서비스계약 대리체결.  **제9조**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는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기타 개항도시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가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가 개업한지 만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의 모회사가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대외개방 개항도시에서 안정적인 화물·승객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3)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 및 그 모회사가 중국 내에서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연속 1년간 중국 법률과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을 위반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의 지사 설립은 이 방법 제7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0조**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의 직원 중 중국 국적의 직원이 85%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는 매년 4월 말까지 직전연도 경영상황을 상무부와 교통운수부에 보고해야 한다. 경영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국 내 항구와 연결된 운항노선;  （2） 총 종업원수, 중국 국적의 종업원수;  （3） 중국 내 항구를 통해 취급한 화물운송량(만톤), 승객수송량(인·차), 컨테이너 수량(TEU) 및 운임수입;  （4） 당해 연도의 매출총액, 이윤총액 및 세금납부액.  **제12조** 중국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의 해운업체가 중국 내 기타 성·자치구·직할시에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이 방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  | **外商独资船务公司审批管理办法**  　　（2000年1月28日交通部、对外贸易经济合作部发布；根据2015年7月5日交通运输部、商务部《关于修改〈外商独资船务公司审批管理暂行办法〉的决定》修正）  **第一条** 为了规范对外国航运公司在中华人民共和国的投资经营行为，保护投资者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法和有关航运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外国航运公司在华设立独资公司，适用本办法。  　　前款所称外国航运公司，是指依照外国法律，在外国设立的航运企业（以下简称为外国航商）。  **第三条**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以下简称商务部）和交通运输部负责外国航商在华设立独资船务公司的审批。  **第四条** 外国航商在华设立独资船务公司，必须依据我国政府同外国航商所在国政府签定的海运协定及相关法律文件进行审批。  **第五条** 设立独资船务公司，申请者须具备下列条件：  　　（一）具有15年以上从事航运的资历；  　　（二）其在拟设独资船务公司的中国对外开放口岸城市具有稳定的货源或者客源;  　　（三）在中国的经营活动连续2年没有违反中国法律和行政法规、规章规定的行为。  **第六条** 申请设立独资船务公司，申请者应当提交下列文件：  　　（一）申请书；  　　（二）可行性研究报告;  　　（三）公司章程;  　　（四）申请者的法律证明文件和资信证明文件；  　　（五）独资船务公司法人代表的委任书和董事会成员的名单及简历；  　　（六）申请者的提单、客票样本；  　　（七）商务部和交通运输部要求的其它文件。  **第七条** 申请设立独资船务公司，按以下程序办理：  　　（一）申请者向拟设立独资船务公司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报送申请材料，省级商务主管部门对材料进行审核，在征得交通运输部同意后予以批准，发给《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或《台港澳侨投资批准证书》;  　　（二）申请获批后，申请者应当在规定的期限内，依照公司登记的有关规定，向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申请登记，领取营业执照，并在有相应管理职权的交通运输主管部门办理《外商独资船务公司经营许可证》后，方可从事经营性业务。  **第八条** 经批准的独资船务公司或其分公司可为其母公司拥有或者经营的船舶从事下列全部或者部分业务：揽货、揽客、代签提单、代出客票、代结运费和代签服务合同。  **第九条** 独资船务公司根据业务需要，可申请在其它港口城市设立分公司。独资船务公司设立分公司需满足以下条件：  　　（一）独资船务公司开业满1年；  　　（二）独资船务公司的母公司在拟设分公司所在对外口岸开放城市具有稳定的货源或者客源；  　　（三）独资船务公司及其母公司在中国的经营活动连续1年没有违反中国法律和行政法规、规章规定的行为。  　　独资船务公司设立分公司的申请程序按照本办法第七条的规定办理。  **第十条** 独资船务公司员工中，中国雇员应当占85%以上。  **第十一条** 独资船务公司应当于每年四月底前向商务部和交通运输部报告上年度经营情况。经营情况报告应当包括以下内容：  （一）挂靠中国港口的航线  （二）从业人员总数，中国雇员数；  　　（三）承运进出中国港口货运量（万吨）、客运量（人次）、集装箱量（TEU）以及运费收入；  　　（四）当年的总营业额、利润总额和纳税额。  **第十二条** 中国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航运企业在中国其他省、自治区、直辖市设立独资船务公司，比照本办法办理。  **第十三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